

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-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현재에는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같음하므로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.

2. 주요골자

- 조항개정 및 신설
 - ▷ 불용물품을 소요 조회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 결정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,
 - ▷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같음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.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재정법 제100조(물품의 처분등)
-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불용결정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하도록 개정하였고,
-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는 물품취득가격(장부가액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공문으로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같음 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합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.

2002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